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검토경과

- 발 의 자: 하병문 · 김정옥 · 김지만 · 육정미 · 윤권근 · 이재숙 · 정일균 · 조경구 의원
- 발의일자: 2022년 9월 30일
- 회부일자: 2022년 10월 4일

2. 제안이유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의 운행 제한 대상 자동차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자동차를 제외함으로써 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운행 제한 대상에 관한 특례
(안 부칙 제2조)

4. 검토의견

□ 적법성 여부

- 본 조례의 상위법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4항에 따르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위한 자동차 운행 제한의 방법·대상지역·대상차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법 체계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주요 검토사항

- 안 부칙 제2조(운행 제한 대상에 관한 특례)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¹⁾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제12조제1항에 대한 특례조항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자동차를 2027년 11월 30일까지 운행 제한 대상 자동차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임.

1) ① 경유차: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유로1~유로3)이 적용된 차량으로 차종에 따라 '08년식까지 5등급인 경우도 있음.
② 휘발유-LPG차: '87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차량, 차량제작 시 등급이 부여되며, 차량 경과 및 차량 상태 등에 따라 등급이 변경되지 않음.

□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때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제12조제1항에 대한 특례조항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자동차를 2027년 11월 30일까지 운행 제한 대상 자동차에서 제외하도록 부칙 제2조(운행 제한 대상에 관한 특례)에 규정하는 것임.
- 상위법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4항에 따르면 자동차 운행 제한의 방법·대상지역·대상차량·발령시간·발령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대구시 5등급 차량 현황('22. 8월 기준)을 보면 3만 6,400대이고, 운행 제한 제외차량과 유예차량이 2만 5,800대로 70.8%라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대구시 5등급 차량 현황 >

('22. 8월말 기준)

5등급 대수	계	운행제한 제외			운행제한 유예('23.11월까지)				운행제한 대상
		소계	장애 인	보훈	소계	영업용	장착불가	저공해신청	
36,408	25,797	1,846	1,629	217	23,951	822	17,791	5,338	10,611

- 사회적 약자의 생활 안정과 보호라는 측면에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한 특례조항을 마련한 이번 조례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의 목적에도 부합하도록 저공해 조치, 조기 폐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감축을 독려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22년 12월부터 도입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에 대비하여 철저한 대시민 홍보와 안내를 통해 시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